대 구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06가단39512 손해배상(자)

원 고 1. 김〇〇

2. 김△△

3. 김□□

피 고 우〇〇

변 론 종 결 2006. 7. 25.

판 결 선 고 2006. 8. 22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 김○○에게 24,312,054원, 원고 김△△, 김□□에게 각 15,674,702원 및 각 이에 대한 2005.
 11. 20.부터 2006.
 8. 22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- 3. 소송비용 중 55%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- 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 김○○에게 56,577,513원, 원고 김△△, 김□□에게 각 33,718,342원 및 각

이에 대한 2005. 11. 20.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가. 책임의 근거

- (1) 우△△는 2005. 11. 19. 03:00경 피고 소유의 00주0000호 스타렉스 차량(이하 '사고 차량'이라고 한다)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2가 ○○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㎞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따라 사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황○○을 사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, 황○○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: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 한다).
- (2)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은 녹색이었고, 보행자신호등은 적색이었다.
 - (3) 망인을 중심으로 원고 김○○은 남편이고, 원고 김△△, 김□□은 자(子)이다.
- (4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호증, 을 제1호증의 2 내지 9, 12, 13,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(다만 을 제1호증의 5, 6, 8, 13, 제2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)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[배척 증거] 갑 제5호증의 1, 을 제1호증의 5, 6, 8, 13, 제2호증의 각 기재

나. 책임의 제한

다만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망인으로서도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, 이러한 망인의 잘 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,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65%로 봄이 상당하다(피고의 책임비율을 35%로 제한하고,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).

2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(월 5/12%의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,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).

가. 망인의 일실수입

(1) 직업, 소득 및 가동연한

망인이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월수입 상당액을 위 망인의 소득으로 본다.

(2) 생계비 : 월 수입의 1/3 공제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법원에 현저한 사실, 경험칙, 갑 제3호증의 1, 2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장례비(원고 김〇〇) : 3,000,000원(다툼 없는 사실)

다. 과실상계 : 피고의 책임비율 35%

라. 공제

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1,519,24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(65%) 상당액 및 사고 차량의 운전자 우△△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원고들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 6,000,000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각 공제한다(을제1호증의 10, 11, 제3호증).

마. 위자료

- (1) 참작사유 : 망인의 성별, 연령, 직업, 가족관계,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,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
- (2) 결정금액 : 망인 20,000,000원, 원고 김○○ 5,000,000원, 원고 김△△, 김□□ 각 3,500,000원

바. 상속관계

망인의 재산을 원고 김 \bigcirc \bigcirc 은 3/7, 원고 김 \triangle \triangle , 김 \square \square 은 각 2/7지분만큼 각 상속

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 김○○에게 24,312,054원, 원고 김△△, 김□□에게 각 15,674,7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5. 11. 20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6. 8. 22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	김세종	